

# 위수탁코트 관리위원회 규정

제정 2024. 10.24.

**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** 본 위원회는 고양특례시테니스협회(이하 “테니스협회” 라 한다) 규약 제37조[각종 위원회의 설치]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, ‘위수탁코트관리위원회’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 )라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이 위원회의 규정은 민간 위·수탁 공공체육시설(테니스장)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, 위·수탁코트 운영 등에 관한 제반 현안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조정 업무와 위·수탁코트 예약 및 회계 등 전반적인 업무를 실행하는 사무국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및 관리클럽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테니스협회 임원 및 사무국 직원, 지부 및 그 지부 산하 모든 조직의 임원 및 사무국장, 관리클럽과 주이용클럽 회장 및 총무, 고양특례시테니스협회 소속 모든 클럽 임원 및 동호인에게 적용한다.

**제4조(구성)**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명
2. 부위원장 2명
3. 위원 5명 이상 11명 이하(위원장 포함)
4. 간사 1명

**제5조(위원의 위촉 등)** ① 위원장은 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부위원장 1인은 관리클럽 회장 중 1인을 당연직으로 한다.

② 위원은 협회 회장, 임명직 부회장 중 1인, 위수탁코트 관리클럽 회

장(각 관리클럽 1인), 주이용클럽 회장 중 1인,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. 위원 중 임명직 부회장 1인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규약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2.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직 위원 수의 40%를 초과할 수 없다.

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사무국장이 당연직 간사를 맡는다.

**제6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규약 제37조에 따른 위수탁코트 관리 및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
2. 관리클럽 및 주이용클럽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위수탁코트 예약 업무 중 관리클럽 및 주이용클럽과 관련된 사항
4. 고양시청 위수탁 운영 지침과 관련한 사항
5. 위원회에 규정된 심의 안전에 관한 사항
6. 위수탁코트 환경 개선 사업 등 사항
7. 그 밖의 위수탁 코트 관련 사항

**제7조(운영 및 소집)**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,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 중 부회장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2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3.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4. 위수탁코트관리위원회의 안정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사회 동의를 얻어 협회 운영위원회가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.

5.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열어야 하며, 운영위원 과반수 동의로 원격 회의(SNS 등)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**제8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테니스협회 이사회의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등 의결을 기준으로 한다.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9조(위원의 해촉)** 이사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 태만,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14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5.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**제1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**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.

**제11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**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12조(제척 및 기피)**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

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**제13조(관리클럽 및 주이용클럽, 관리비)** 관리클럽은 위수탁코트 대표 클럽이 맡으며, 클럽의 명칭은 당해코트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. 협회 사무국은 관리클럽에 정한 관리비를 매월 지급하여야 하며, 위수탁코트관리에 필요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.

1. 관리클럽은 대화클럽, 성라클럽, 중산클럽, 충장클럽, 토당클럽, 화정클럽으로 정한다.

2. 관리클럽은 회원 최소 50명 이상, 당해 코트 이용 5년 이상이어야 하며, 회원 중 관외자는 전체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 관리클럽은 협회의 지침에 따라 당해코트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, 정한 바에 따라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단, 위원회 의결로 자격요건에 다소 미비하더라도 관리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.

3. 주이용클럽은 회원 최소 30명 이상, 당해 코트 이용 3년 이상이어야 하며, 회원 중 관외자는 전체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위원회 의결로 자격요건에 다소 미비하더라도 주이용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.

4. 관리비는 매월 면당 10만원으로 하며, 고양시 위수탁관리업무 지침 등 규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. 또한 배수로 작업, 동계제설 작업 등 인력 및 경비가 추가 투입되어야 할 관리 작업에는 실비(식비 등)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4조(관리클럽 및 주이용클럽 지정 해제)** 관리클럽과 주이용클럽 지정 및 해제는 위원회 의결에 따르며, 당해코트 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 미이행 및 불성실 관리 시 해제할 수 있다. 또한 관리클럽 및 주이용클럽 자격 조건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, 위원회 의결로 지정을

해제할 수 있다.

**제15조(관리클럽의 역할과 의무)** 관리클럽의 역할은 별첨으로 정한다.

**제16조(규정의 개정)** 협회와 관리클럽은 매년 관리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 있다.

[별첨] 위수탁코트 관리 내용

- 1) 테니스공 보풀 등 먼지 청소(빗자루 사용), 테니스공 및 테니스공 캔 수거 정리
- 2) 플라스틱, 알루미늄 캔, 유리 등 일반 쓰레기 분리수거 후 지정 장소에 옮김
- 3) 제설 및 강우 시 물 제거(넉가래, 제설삽, 물밀대로 수작업), 낙엽 청소(하수구 막힘 방지)
- 4) 야간 조명 점등 및 점멸 관리 및 각종 전기 관련 체크 (점등기 오작동 체크 등) 및 협회 사무국에 수리 요청.
- 5) 코트 간 분리막, 스코어 보드 등 관리
- 6) 제설용 삽, 물 밀대, 넉가래, 분리수거 및 낙엽 처리용 마대, 일반 종량제 봉투 등 관리 용품 수시 체크 및 보수 요청.
- 7) 코트 안내판, 코트 출입문, 네트 중앙 핀 등 파손 또는 훼손 시 보수, 기능 불량 시 보수
- 8) 인조 코트 모래 충전, 모래 유실 방지 작업
- 9) 하수구·배수로 점검 및 청소(낙엽 제거, 그립 교환 후 발생하는 폐기물 등 수거 정리)
- 10) 컨테이너 등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
- 12) 예약자 및 이용자 현장 점검 등 대응
- 13) 화장실, 락커 룸, 샤워실 등 시설물 유지 관리